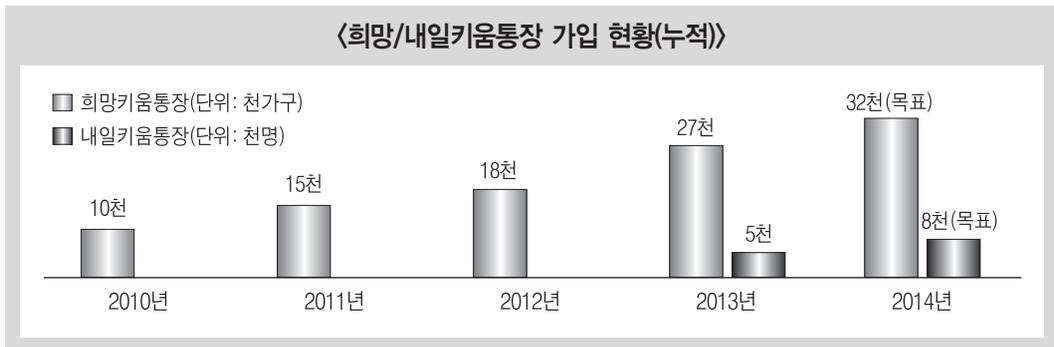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2014년 3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 ■ ■ 일하는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3년의 결실로 홀로서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3월 3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8천 가구(희망키움통장 5천, 내일키움통장 3천)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는 '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6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약 2,000만원 수급 가능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 (가입현황, 누적) 10천('10년) → 15천('11년) → 18천('12년) → 27천('13년)

**<희망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6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 지원 가능
-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10년부터 가입하여 3년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들 중 60%가 탈수급하는 등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는 여타 자활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실제 분석한 결과, 가입가구의 60%인 6,404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 해지 진행 중인 가입가구까지 완료될 경우, 탈수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가입가구의 해지 현황('13.12.31일 기준)>**

구분	가입인원	해지 현황			해지절차 진행중
		소계	탈수급 등 지급요건 충족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중도해지 포함)	
2010년	10,685 (100%)	9,763 (91.4%)	6,404 (59.9%)	3,359 (31.4%)	922 (8.6%)

- 또한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지원금은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85.5%)으로 사용하였다.
- 희망키움통장은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매월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나은행이 함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자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 하고 있다.
-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14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총 5천 가구를 3월 3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3·6·9월 연 3회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합니다: 내일키움통장>**

- 또한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1:1(시장진입형) 또는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 \*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3년 첫 해 5천명이 가입하였다.

**<내일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평균 1,1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
-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다.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으로 적립하고, 본인 적립금에 대해 매칭 지원함으로써
  - 참여자가 열심히 일할수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자활근로사업단도 활성화되고, 투명성도 제고되는 자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14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총 3천

가구를 3월 3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연 8회('14.3~10월)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이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 (현행)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 (개선) 일하는 차상위가구까지 확대

○ 내일키움통장 역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반기부터는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 (개선)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까지 확대

##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3년도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11개 시설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

□ 평가결과, 3개 유형 시설의 평균 점수는 85.2점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	연도	2010년		2013년		평균점수 증감('13~'10)
		시설수	평균점수	시설수	평균점수	
전체평균		555개	84.8점	1,014개	85.2점	↑0.4
아동복지시설		266개	88.4점	275개	90.0점	↑1.6
장애인거주시설		289개	81.5점	367개	87.9점	↑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372개	79.1점	-

① 아동복지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1.6점)하였지만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처음으로 평균점수 90.0점대로 평가되었고

②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6.4점 상승한 87.9점을 기록하여 타 유형의 생활시설 수준에 근접 또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정신요양시설 89.9점('11년), 노숙인복지시설 89.9점('11년), 노인양로시설 86.6점('1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4.7점('2년)

③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타 유형시설에 비해 저조한 79.1점을 기록하였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처음 평가를 받는 시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설운영의 노하우·경험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 향후 평가가 거듭될수록 시설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복지시설 최초 82.0점(1회차 평가, '01년) → 현재 90.0점(5회차 평가, '13년)

장애인거주시설 최초 70.5점(1회차 평가, '01년) → 현재 87.9점(5회차 평가, '13년)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 영역별 평가결과에 의하면,

- ㉠시설 및 환경(91.0점) 영역(생활공간, 편의시설,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 측정)과 ㉤이용자의 권리(90.4점) 영역(이용자의 비밀보장, 고충처리, 인권보장 노력 등 측정)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반면, 신규 또는 강화된 지표가 많은 ㉢인적자원관리(82.6점) 영역(종사자 교육, 인사관리, 전문성 등 측정)과 ㉦지역사회관계(80.3점) 영역(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관련 등 측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15개 지표 중 10개 지표,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신규 또는 강화

구 분	시설수	평균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b>전체평균</b>	1,014	85.2	91.0	84.5	82.6	85.7	90.4	80.3
아동복지시설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장애인거주시설	367	87.9	91.1	86.4	84.5	88.2	93.7	8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72	79.1	87.9	79.9	78.8	78.6	83.5	69.8

□ 평가등급별 현황에 의하면, A등급 449개소(44.3%), B등급 346개소(34.1%)로 전체 1,014개 시설 중 B등급 이상이 795개소(78.4%)로 나타났다.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전체 275개 시설 중 258개 시설(93.8%)이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시설 운영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전체 367개 대상시설 중 316개 시설(86.1%)이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금년 처음 평가를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372중 221 시설이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단위 : 개소수, %)

구분	시설수	등급별 시설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b>전체평균</b>	1,014	449(44.3)	346(34.1)	113(11.1)	58( 5.7)	48(4.7)
아동복지시설	275	176(64.0)	82(29.8)	11( 4.0)	1( 0.4)	5(1.8)
장애인거주시설	367	197(53.7)	119(32.4)	31( 8.4)	12( 3.3)	8(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72	76(20.4)	145(39.0)	71(19.1)	45(12.1)	35(9.4)

\* 평가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90점 미만, (C) 70점 이상~80점 미만, (D) 60점 이상~70점 미만, (F) 60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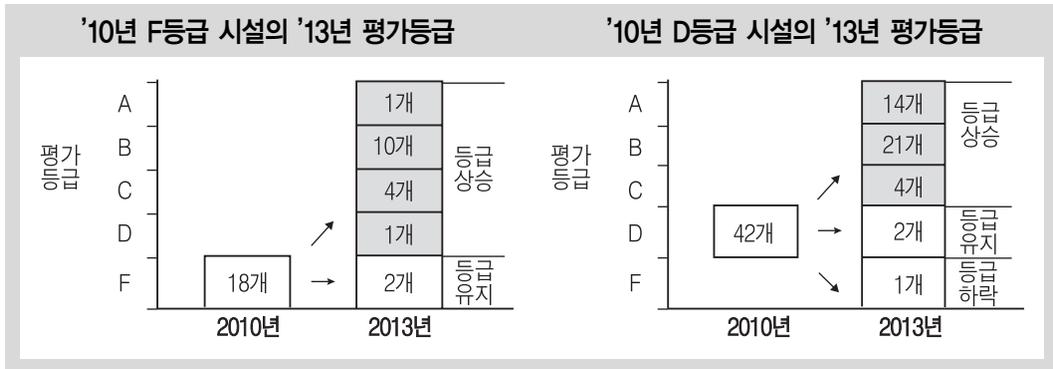
○ 또한 평가횟수가 늘어나면서(5회차) 상당수의 시설이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일정수준에 도달한 우수시설은 다음평가에서도 계속 우수시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분석된다.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시설의 42.9%(275개 중 118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시설의 16.9%(367개 중 62개)가 2회 연속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계	평가대상 시설수	연속 A등급 시설				1회 A등급
		소계	2회 연속	3회 연속	4회 연속	
아동복지시설	275	118	50	45	23	57
장애인거주시설	367	62	32	26	4	134
계	642	180	82	71	27	192

□ 아울러 2010년 평가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어 복지부의 품질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은 60개의 시설 중 50개의 시설이 2013년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였다.

- 이는 품질관리서비스 지원효과와 더불어, 시설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학계, 협회, 우수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관리단을 통해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속으로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노력도, 차기 유사등급 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영역 축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된다.
-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 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이며, 이를 위해 同 기간까지 수출액 13.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하는 목표

를 설정하였다.

\* '13년 기준, 우리나라 수준: 수출액 2.5조, 세계시장 점유율: 1.2%, 고용인력: 3.7만명

□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①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③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④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 먼저,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중개연구: 개발된 원천기술이 임상적용에 적합하도록 변환하는 연구

○ 두 번째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도 확대한다.

○ 셋째,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지원 및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 또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국산 제품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하여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확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 ■ ■ ■ 정부, '장애 종합판정 도구' 새로 개발한다.

□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한다.

○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 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 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여 현행 장 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정부는 또,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특수학교 4개교·학급 500학급 증설, 특성화교육 지원센터 확대('13년 9개소→'14년 12개소)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14년 8억원 국비지원, 5천명 대상)

○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소득하위 63→70%), 급여액 인상(현행 9.7→20만원)

\* 의무고용비율 상향(공공: '13년 2.5→'14년 3.0%, 민간: '13년 2.5→'14년 2.7%)

\* 이동편의: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 콜택시 270대 도입

□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하였다.

○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연전·어선 등 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 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 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 별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 △장애인 인권에 대 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지행위 확대: 장애인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

\*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現, 시설운영·종사자)

\* '15년부터 장애인 보호기관(27개소), 보호 쉼터(16개소) 확보 추진

□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으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 5천여 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 \* 3급 1만명, 4~6급 5천명의 수급자 증가, 연간 1,140억원 추가 소요
-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등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보조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인프리를 확충하여 복지혜택의 지역 편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 이밖에 △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통합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4월에 출시예정인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염전,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업무가 아닌 만큼 부처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 연임: 김용직(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변용찬(남)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신순희(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오혜경(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신규임명: 김광환(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김양수(남) 특수교육총연합회장, 박명숙(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서(남) 종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이다.

-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

- (상반기, 75개소)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 (하반기, 75개소)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14.2.14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를 금지한다.
  - 이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었다.

\* A값: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고**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대상 및 선정기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선정기준액

구분	'13년	'14년	증감
단독	58.0만원	68.0만원	증 10만원
부부	92.8만원	108.8만원	증 16만원

\*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수준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의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대상자	18~64세 이하	18세 이상
급여액	99,100원	(18~64세)2~8만원, (65세 이상)4~17만원